

'17년 추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
보조금 업무처리지침(안)

'17. 7

환 경 부
교 통 환 경 과

목 차

1. 개 요	1
2.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	2
3.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	3
4.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	9
5. 시범사업, 유지관리비 지급, 생계형차량 기준 등	12
6. 장치제작사별 보급물량 및 신규인증 장치 관리	14
7. 저감장치 탈거	15
8. 사후관리 및 보고	17

1. 개요

가. 목적

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수도권대기법”이라 한다)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저공해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

나. 근거

- 수도권대기법 제25조, 제26조의4
-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, 제60조의2, 제60조의3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보조금법”이라 한다)
-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보조금지급규정”이라 한다) 제5조의1(비용지원) 및 5조의2(대기관리 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)

다. '17년 추경 저공해조치 사업계획

- 사업비 : 35,402백만원(지방비 포함시 70,804백만원)
- 사업방식 : 차치단체 자본보조(국비 50%(평택시 70%), 지방비 50%)

< '17년도 추경 시·도별 사업량 및 국비 지원내역 >

(단위 : 대, 천원)

구분	총 계		조기폐차		DPF · pDPF		LPG 엔진개조	
	물량	국비	물량	국비	물량	국비	물량	국비
계	27,281	35,402,000	23,149	18,612,000	1,688	2,500,763	287	499,237
서울	13,205	18,738,910	10,907	8,769,228	653	967,420	237	412,262
인천	2,300	3,733,000	2,000	1,608,000	-	-	-	-
경기	5,837	5,902,372	5,207	4,186,632	500	740,740	-	-
울산	300	241,200	300	241,200	-	-	-	-
대구	400	457,100	200	160,800	200	296,300	-	-
대전	130	305,400	100	80,400	-	-	-	-
충북	550	476,075	500	402,000	50	74,075	-	-
충남	850	920,255	730	586,920	90	133,335	-	-
전북	979	2,276,915	686	551,544	34	50,371	-	-
전남	741	624,219	699	561,996	42	62,223	-	-
경북	404	354,626	360	289,440	44	65,186	-	-
경남	361	304,472	340	273,360	21	31,112	-	-
강원	612	520,503	570	458,280	42	62,223	-	-
제주	562	506,753	500	402,000	12	17,778	50	86,975
세종	50	40,200	50	40,200	-	-	-	-

(단위 : 대, 천원)

구분	PM · NOx 동시저감		건설기계 DPF		건설기계 엔진교체	
	물량	국비	물량	국비	물량	국비
계	422	3,165,000	955	4,775,000	780	5,850,000
서울	80	600,000	788	3,940,000	540	4,050,000
인천	100	750,000	50	250,000	150	1,125,000
경기	100	750,000	-	-	30	225,000
울산	-	-	-	-	-	-
대구	-	-	-	-	-	-
대전	-	-	-	-	30	225,000
충북	-	-	-	-	-	-
충남	10	75,000	10	50,000	10	75,000
전북	132	990,000	107	535,000	20	150,000
전남	-	-	-	-	-	-
경북	-	-	-	-	-	-
경남	-	-	-	-	-	-
강원	-	-	-	-	-	-
제주	-	-	-	-	-	-
세종	-	-	-	-	-	-

2.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

가. 보조사업 수행기관 : 지방자치단체 장(이하 “지자체 장”이라 함)

나. 보조금 교부조건

- (지방비 보조) 지자체 장은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
- (집행 준수사항) 지자체 장은 보조금 집행 시 특별법, 보조금법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

다. 보조금 용도 및 관리

- (보조금 용도) 보조금 집행은 '17년 추경 보조금 지침 상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에 한함
- (별도계정 관리) 지자체 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,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

□ (보조금 집행관리) 지자체 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·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

○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현황 및 부착대상 차량 현황, 차량의 연식, 부착제한 차종 등을 확인하여 지원

□ (집행계획 수립) 지자체 장은 '17년도 추경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대상 경유차 현황,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을 수립

라. 보조금 교부신청, 교부, 교부결정 취소

□ (교부신청 및 교부) 지자체 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유역(지방)환경청장(별지 제1호 서식)에게 제출

유역(지방청)	지자체	유역(지방청)	지자체
수도권청	서울, 인천, 경기	원주청	강원도, 충북(충주시 등 5개 시·군)
낙동강청	울산, 경남(하동, 남해 제외)	대구청	대구, 경북
금강청	대전, 충남, 세종, 충북(청주시 등 6개 시·군)	새만금청	전북
영산강청	제주, 전남, 경남(하동, 남해)		"여 백"

※ '17.7월 집행계획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'17.7.28일까지 제출

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은 지자체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교부

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은 지자체 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

○ 지자체 장과 유역(지방)환경청장은 '17년 추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연내에 집행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

□ (교부결정의 취소) 지자체 장은 보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가능

○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·취소할 경우 즉시 유역(지방)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

○ 지자체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(이자 포함)을 유역(지방)환경청장에게 반납

※ 다만,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)

마. 보조금 집행대상

□ 조기폐차 대상차량

○ 연식이 오래된 차량^{*},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

* '02년 이전에 제작된 Euro-1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 등

○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
- ②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
-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
-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
-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
- ⑥ '05.12.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

□ 매연저감장치 등 대상차량

○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아래 자동차(건설기계 포함)

- ①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
- ②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차량
-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
- ④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

3.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

가. 조기폐차

-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*

* 세부적인 내용은 「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

<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'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		'01년 1월 1일부터 '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	
	상한액	지원율	상한액	지원율
3.5톤 미만	없음	100%	1,650	100%
3.5톤 이상 6,000cc 이하			4,400	
3.5톤 이상 6,000cc 초과			7,700	

- 1)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
- 2)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 10%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- 3)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

-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 적용

※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

-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
- 지자체 장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

나. 매연저감장치 등 지원금액

- (보조금 지원)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

-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대상차량의 배기량이 대형장치와 중형장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함

* 다만,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1,000cc초과하거나, 정격출력이 240Ps를 초과할 경우 대형장치 적용 가능

<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장치 가격				유지 관리비		
	계	보조금	자기부담				
			금액	부담율			
DPF	자연대형	5,732	5,159	573	10.00%	462	
	자연중형	5,367	4,830	537	10.00%	462	
	복합대형	10,308	9,277	1,031	10.00%	462	
	복합중형	7,759	6,983	776	10.00%	462	
	복합 소형						
	RV, 승합	3,735	3,268	467	12.50%	462	
	화물	3,734	3,361	373	10.00%	462	
p- DPF	중형	2,423	2,072	351	14.50%	12	
	소형 (A)	저감효율 70% 미만					
		RV, 승합	1,722	1,429	293	17.00%	12
		화물	1,722	1,472	250	14.50%	12
	70% 이상	RV, 승합	1,722	1,464	258	15.00%	12
		화물	1,722	1,507	215	12.50%	12
	소형 (B)	저감효율 70% 미만					
		RV, 승합	1,952	1,620	332	17.00%	12
		화물	1,952	1,669	283	14.50%	12
		저감효율 70% 이상					
	RV, 승합	1,952	1,659	293	15.00%	12	
	화물	1,952	1,708	244	12.50%	12	
LPG 엔진 개조	RV, 승합	4,263	3,858	405	9.5%	47	
	1톤 화물	4,263	3,965	298	7.0%	47	

1.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2.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(클리닝비용 45만원, 콜모니터링비용 1.2만원, 무상점검비용 3.5만원)이 포함된 금액이며,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
※ DPF : 클리닝비용+콜모니터링비용, pDPF : 콜모니터링비용, LPG엔진개조 : 콜모니터링비용+무상점검비용
3.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「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 고시 제2016-136호) 제10조 [별표2]의 금액에 따름
4.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
5. 저공해조치 비용에 3%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
6. 소형 pDPF의 70%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·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
7. pDPF 소형 A 장치제작사는 HK-Mns, 화이버텍, 씨엠씨이고 소형 B 장치제작사는 세라컴, 일진복합이며, 이외 장치제작사는 가장 낮은 가격 적용
8.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

다.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

□ (사업대상) PM·NOx 동시저감장치 등의 사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차량 선정

구 분	부착대상
PM-NOx 동시저감장치	'02~'07년식 배기량 5,800~17,000cc, 출력 240~460PS 경유사용 차량
건설기계 엔진교체	tier-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, 굴삭기 등 건설기계('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, 75kw 이상 130kw 미만은 '05년 이전 제작, 75kw 미만은 '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)

- **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**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확인을 받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
 - 「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 고시 제2016-54호)에 따라 인증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엔진(Tier-3 이상)을 공급(엔진제작사 또는 엔진제작사와 3년 이상의 장기 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)할 수 있는 자
 - 환경부 등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성능평가를 받은 자
 - 사업자 자체적인 사업실적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준하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□ (지원금액) PM·NOx 동시저감장치 부착, 건설기계 엔진교체, 전기 굴삭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아래와 같음

○ PM·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금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장치가격			유지관리비
	계	보조금	자기부담금 (10%)	
일체형 A	13,629	12,266	1,363	1,782
일체형 B	15,196	13,676	1,520	1,782
분리형	6,000	5,400	600	1,332

1.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2.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(요소수비용 132만원, 클리닝비용 45만원, 콜모니터링비용 1.2만원) 포함
※ 일체형 : 요소수비용+클리닝비용+콜모니터링비용, 분리형 : 요소수비용+콜모니터링비용
3.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「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 고시 제2016-136호) 제10조 [별표2]의 금액에 따름
4.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
5. 저공해조치 비용에 3%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
6. 일체형 A 장치제작사는 세라컴, 크린어스이고, 일체형 B 장치제작사는 이엔드디, 일진복합임
7.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

○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장치가격			유지관리비
	계	보조금	자기부담금 (10%)	
대형	10,388	9,349	1,039	462
중형	7,400	6,660	740	462

1.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2.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(클리닝비용 45만원, 콜모니터링비용 1.2만원) 포함
3.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「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 고시 제2016-136호) 제10조 [별표2]의 금액에 따름
4.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
5. 저공해조치 비용에 3%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
6.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

○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 계 차			굴 삭 기	
	2톤 ¹⁾	4톤	6톤	5톤 ²⁾	14톤
장치가격	12,858	20,994	23,288	19,211	29,727
보조금	11,572	18,265	20,261	16,714	25,268
자기부담금 (부담율)	1,286 (10.0%)	2,729 (13.0%)	3,037 (13.0%)	2,497 (13.0%)	4,459 (15.0%)

1) 엑시언 보급 엔진 지계차(2톤)의 보조금은 10,026천원(자기부담금 1,114천원, 10%)

2)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(5톤)의 보조금은 13,168천원(자기부담금 1,968천원, 13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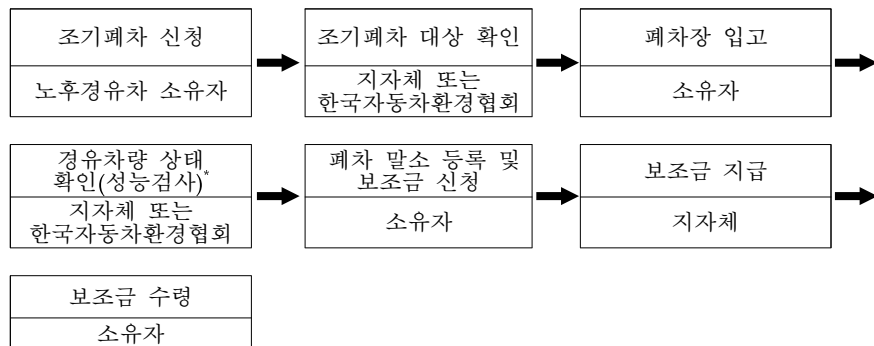
〈전기굴삭기 사업 지원 금액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전기굴삭기		
	14톤	20톤	30톤
장치가격	34,632	38,163	41,269
보조금	13,853	15,265	16,508
자기부담금 (부담율)	20,779 (60%)	22,898 (60%)	24,761 (6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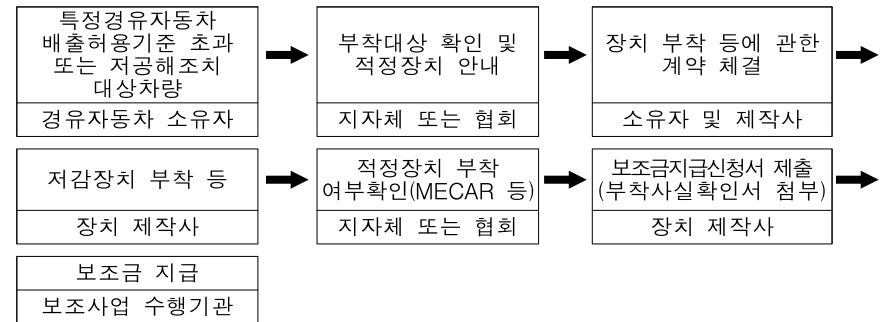
4.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

가. 조기폐차 절차



*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,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

나. 저공해조치 절차



① (대상차량) 지자체 장은 차량의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을 선정

○ 저공해조치는 차량의 내구성(장치 부착후 2년 의무 사용)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(Euro-3) 위주로 추진

○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 권고

○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연식에 따른 제한을 완화 가능

○ 항만·공항 입·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노후경유 화물차, 지자체 노후경유 청소차, 수도권매립지 및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입·출입 노후경유 화물차 우선 선정

○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(건축물축조공사장,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) 입·출입 노후 건설기계 우선 선정

② (적정장치 안내) 협회는 차량의 특성 및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장치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함

③ (계약체결) 차량소유자는 장치 부착 시 자기부담금 납부

④ (저공해조치) 차량소유자는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(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)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함

- 다만, 장치 부착 등의 시기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로부터 1개월 조치 기한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장치제작사에 있는 경우 지자체 장은 기간을 정하여 장치제작사의 장치 부착 등을 제한할 수 있음
 - 지자체 장은 차량소유자가 저감장치 등 부착시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시 연장기간을 정하여 접수 받아야함
 -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, 당해 연도 예산소진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익년 2월말까지 유예조치
- ⑤ **(저공해조치 차량 조치)** 지자체 장은 저공해조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
-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정밀검사 면제대상으로 명기
 - 환경개선부담금 면제
 -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3년
 - 저공해 엔진개조 또는 교체 자동차는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
 - 구조변경검사가 완료된 장치 부착·개조차량이 보조금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
 -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치는 환경부 지침*에 따라 클리닝비, 반납관리비, 유지관리비 지원
 - *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('12.5월)
- ⑥ **(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)** 장치제작사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제출, 다만,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
- 1) 「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·교체 확인서」(별지 제2호 서식)
 - 지자체 장은 「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」을 활용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 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
 - 2) 유지관리비용 청구서(협회작성)를 첨부한 「보조금지급청구서」(별지 제3호 서식)
- ⑦ **(보조금 지급)** 지자체 장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 간의 저공해조치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

- 지자체 장은 장치제작사로부터 「보조금지급청구서」 접수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
 -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지급시기를 보조금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
 - * A/S 부실 등으로 인한 과다 민원발생(콜모니터링,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등을 분석·확인) 등
- <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사항 >
-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실
 - 보조금지급규정 별표1에 적합한 차량에 부착 여부
 -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합격여부
 - 장치보증서 발행 여부
 -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협회와 장치제작사간 체결된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 발행 여부
 - 생계형 차량 증명 서류
- 지자체 장은 장치제작사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내역과 『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』에 장치제작사가 등록한 저감장치 부착현황 등을 비교·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
 - 지자체 장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장치제작사에게 직접 지급 가능
 - 이 경우 “별지 제2호 서식”에 차량소유자(회사에 소속된 차량의 경우 그 회사의 관리자) 또는 차량운행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·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며,
 - 차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법인 인감증명서 포함)를 제출받아야 함
 - * 차주가 장치제작사에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명의로 통장에 입금 처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의 제출을 생략함
 - *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

5. 시범사업, 유지관리비 지급, 생계형 차량 기준 등

가. 시범사업

- **(협의추진)** 지자체 장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기술 또는 건설기계 등 새로운 대상에 적용한 장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

-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 비용을 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- 지자체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유역(지방)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

나. 유지관리비

- **(청구 및 지급)** 지자체 장은 유지관리비용을 협회의 장에게 지급하여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유지관리에 사용되도록 함
 - *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검사기관(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 등)에 지급함
- 장치제작사 등은 유지관리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협회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
- 지자체 장은 유지관리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비용을 협회장에게 지급
 - 유지관리비용 지급시 지급대상 목록 및 지원 항목별(클리닝비, 무상점검비, 콜모니터링비) 지급금액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함

다. 생계형 차량 보조금 지원

- **(제출서류)** 생계형 차량*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
 -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
- 생계형 차량 여부 확인 방법
 - 소득신고금액 : '16년도 신고금액 자료 활용
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: 조기폐차 신청일 및 구조변경검사 완료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

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

-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(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)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(공동명의 차량) 모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
- 운수회사(법인)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(지입차량)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, 차량소유주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
 - *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

6. 장치제작사별 보급물량 및 신규인증 장치 관리

가. 장치제작사별 보급물량

- **(보급물량 관리)** 지자체 장은 장치제작사로부터 관할 지역 내 부착물량 등을 포함한 연간 보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
 - 지자체장은 장치제작사의 보급 능력 및 사후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정한 보급물량의 20% 범위 이내(관할 지자체 보급계획 물량 비율 기준 적용)에서 그 물량을 가감할 수 있음
 - 장치제작사가 보급물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보급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 - ※ 협회는 장치제작사의 월간 보급물량을 익월 10일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
- **(제3자 약정금지)** 장치제작사는 저공해 조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와 약정하고 그에 대한 급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
 - 위반 시 해당 제작사의 보급물량 제한 및 기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

나. 신규인증 장치

- **(사업계획 제출)** 지자체 장은 신규 인증 장치제작사에 사업참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
- **(보조금 지급시점)** 신규 인증 장치는 50대 이상 장치 부착 및 성능 확인 후에 보조금 지급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**(성능유지여부 확인)** 신규 인증장치 또는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장치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의 성능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장치제작사별로 보급물량을 제한할 수 있음
 - 단계별 모니터링 방법 및 판단기준은 「배출가스저감장치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방안(12.30)」에 따름
 - 단계별 적합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단계에서부터 재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며, 최종 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보급물량을 제한 또는 보급중단을 조치할 수 있음

< 배출가스저감장치 단계별 모니터링 절차 및 보급물량 한도 >

구 분	신규 인증시	단계별 모니터링 적합판정시			
		1단계 ¹⁾	2단계 ²⁾	3단계 ³⁾	
DPF	복합소형	총 300대	100대/월	200대/월	300대/월
	기타	필요시 보급물량 한도 별도 설정			
p-DPF		"			

- 1) 신규 인증후 장치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(교통환경연구소)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적합여부를 심사받아 보급하는 물량
- 2) 신규 인증 후부터 1단계까지 보급한 물량에 대해 과학원(교통환경연구소)과 협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술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보급하는 물량
- 3) 신규 인증 후부터 2단계까지 보급한 물량에 대해 과학원(교통환경연구소)과 협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기술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보급하는 물량

7. 저감장치 탈거

가. 보조금 회수

- (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)** 지자체 장은 아래의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
 - 의무운행 기간(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)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
- (보조금 회수기준)**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·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지자체 장은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(수도권대기법시행규칙 별표 8의2,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)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
 - 장치 미 반납 시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함
 - 지자체 장은 엔진교체를 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최소 3년간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
 - 사용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
 - 지자체장은 엔진교체 건설기계가 배출허용기준*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간** 동안(1년 또는 2만km) 동안 무상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함
 - *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다목
 - **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제6호

(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) 탈거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*는 예외로 함

- 노선변경 등 장치부착 조건 변경, 가짜연료 사용, 사고, 도난 및 천재지변,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
 - *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을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결과 등을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

(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) 회수한 보조금은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사용

-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장치제작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음
 - 다만, 상계는 저감장치 부착 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에 한함

나. 탈거승인

- (장치 탈거승인)** 지자체 장은 저공해조치 후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한 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후 탈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, 탈거장치는 반납 처리하여야 함
 - 운행조건, 용도 등 변경으로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
 -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시행 지역으로 이전등록 하여 장치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(장치제작사의 A/S 불가사유 등 확인)
 - 장치 도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(장치반납 제외)

8. 사후관리 및 보고

가. 보조사업의 사후관리

- **(관리실태 점검)**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지자체장은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의 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를 점검
 - 협회가 조사한 콜모니터링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제가 있는 장치는 저감장치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, 협회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조치
 - 소형 p-DPF 장치 등 매연 부적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 위주로 점검하고 부적합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 등 조치

나.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

- **(집행실적 제출)** 지자체 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유역(지방)환경청장에게 제출
 - 다만,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 제출
- **(유지관리비용 실적 제출)** 협회는 유지관리실적을 지자체장 등에게 제출하고, 지자체장은 2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·정산하여 유역(지방)환경청장에게 제출
 - 매 분기 : 협회는 유지관리비용(클리닝비, 무상점검비) 집행실적을 유역(지방)환경청장 및 지자체 장에게 제출
 - 장치부착 완료시점 : 유지관리기간 종료일(3년)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유지관리비용 집행실적 제출

다. 사업정산

- **(정산)** 지자체 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유역(지방)환경청장에게 제출(별지 제4·5호 서식 준용)
 -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

-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

< 보조금 및 유지관리비용 정산기준 >

사안별	장치 부착 보조금 (장치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)	유지관리비용			성능유지확인 검사 비용 (교통안전공단)
		협회		미 회수	
		클리닝	콜모니터링		
① 인증조건 부적합 ¹⁾	전액 회수	전액 회수	전액 회수	전액 회수	
② 탈거명령 및 탈거승인 ²⁾	전액 회수	탈거 및 폐차 시점을 기준으로 미집행 금액만 회수	보증기준 3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회수	미 회수	
③ 수출·폐차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	의무운행기간 2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회수				

- 1) “인증조건 부적합”이란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제원(년식, 배기량 등)이 인증서상 부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에 부착한 경우임
 - 2) “탈거명령 및 탈거승인”이란 서울특별시장 등이 점검 및 특별법 제25조 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등을 통해 보증기간 동안 그 성능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탈거명령한 경우 및 장치제작사가 탈거를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임
- ☞ 콜모니터링의 사용기간별 회수기준은 별표 1 콜모니터링 비용 정산(회수) 세부 기준표를 기준으로 함

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·교체 확인서

다음 차량은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

장차차량 현황

차량소유자			차 명		
차량번호			연 식 (최초등록일)		
배 기 량	cc		출 력	ps	km
2)부착 전 매연농도	KD-147	%	엔진 오일소모량	ℓ / 1,000km	특이사항 (차량정비사항)
	lug-down	%			
	무부하급가속	%			

장치 현황

3)장치구분 (인증번호)	()	4)장치종류		제품(일련) 번호	
제 작 사		장착장		장 착 일 (구조변경일)	년 월 일

준수사항 및 유의사항

-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의무가 있음
 - 구조변경검사일~2년(의무사용기간) 이내 : 장치 및 보조금 반납(사용기간별 20~70%)
 - 2년(의무사용기간) 경과 : 장치만 반납
-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
 -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
-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
-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(LPG)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교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
-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·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

인수 서류 목록

- 자동차등록증 원본(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)
- 장치 보증서(차량소유주 고의·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)
-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
- 보조금의 청구·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(또는 사업자등록증)
- 차량소유자(또는 차량운행자)의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
-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
- 장치 A/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
-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·교체 확인서 사본

년 월 일

작성자(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) : (인), 연락처()
 확인자(장착장) : (인), 연락처()

○○○○회사 대표자 귀하

※ 작성 시 유의사항

- 1) 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
 - 고속버스, 관광버스, 마을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청소차량, 학교차량, 학원차량, 회사차량, 특수차량(집게차, 살수차, 기내식 운반차, 굴선타입차, 사다리차, 크레인차,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, 전경·병원·혈액원 버스, 방송국차량, 소방차, 냉동, 냉장, 렉카차량, 구급, 분노차량)
 -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(시내주행만 하는 차량), 장거리 운행차량(지방운행이 많은 차량)
- 2) 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,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, 장착사업장에서 측정 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
- 3) 란의 장치구분(인증번호)는 제1종(DPF), 제2종(p-DPF), 저공해(LPG)엔진개조, PM·NOx동시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,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
- 4) 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(DPF)의 경우 복합중형, 복합대형, 복합소형, 자연중형,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, 제2종(p-DPF)의 경우 중형,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, PM·NOx동시저감은 일체형, 분리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

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

(단위 : 천원)

구분	보조 금액	교부 금액	집행액 누계				집행 잔액	비고	
			계	7월	8월				
합 계						실적	계획	실적	
배출가스 저감장치	소 계								
	DPF	소 계							
		자연대형							
		자연중형							
		복합대형							
		복합중형							
	복합 소형	RV, 승합							
		화물							
	p-DPF	소 계							
		중 형							
		소형	저감효율	RV, 승합					
70% 이상			화물						
저감효율			RV, 승합						
70% 미만	화물								
PM·NOx 동시저감장치									
저공해 (LPG)	소 계								
RV, 승합									
엔진 개조	1톤 화물								
노후차 폐 차	소 계								
	RV, 소형승합								
	중 소형 화물								
버스, 대형화물									
건설기계	DPF	소계							
		복합대형							
		복합중형							
	엔진 교체	소계							
		지게차	2톤						
			4톤						
			6톤						
			14톤						
			20톤						
		30톤							
굴삭기	5톤								
	14톤								

3 특기사항

※ 부진사유, 향후 사업전망,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

[별지 제5호 서식]

○○년 유지관리비용 집행실적

1. 유지관리비용 적립 현황

(단위 : 대, 만원)

구 분	○○ 년		비고
	대수	금액	
합 계			
클리닝 (펠릿 교체·충진)	제1종(DPF)		
콜 모니터링	소 계		
	제1종(DPF)		
	제2종(pDPF)		
	엔진개조(LPG)		
	PM·NOx		
요소수 보충			
무 상 점 검			

2. 유지관리비용 집행실적

(단위 : 대, 만원)

구분	○○ 년		집행잔액
	대수	금액	
합 계			
클리닝 (펠릿 교체·충진)	제1종(DPF)		
콜 모니터링	소 계		
	제1종(DPF)		
	제2종(pDPF)		
	엔진개조(LPG)		
	PM·NOx		
요소수 보충			
무 상 점 검			

< 별첨 1 >

위 입 장	
차량 의 표 시	차량등록번호 : 차 명 : 저감장치종류 :
장치부착(엔진개조)일	년 월 일
위입의 내용	〇〇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
위입한 보조금액	금 원 정
위 입 인	대 리 인
차량소유자 :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	대리인 : (장치제작사) 주소 :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〇〇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. 또한,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. 년 월 일
차량운행자 :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	
차량 소유자와의 관계	
(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, ㉠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)	

< 별첨 2 >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★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- ◆ (수집·이용기관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,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(한국자동차환경협회)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·운영기관(한국환경공단)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(교통안전공단)
- ◆ (수집·이용목적)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, 저공해(LPG)엔진 개조·교체,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
- ◆ (수집항목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차량등록번호, 생년월일
- ◆ (보유·이용기간)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* 근거: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
- ◆ (동의 거부권리 안내) 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.

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(성명)

(서명, 날인)

〇〇시·도지사 귀중

[참고1] 「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3호서식

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				처리기간 10일	
소유자	①성 명		②생년월일		
	③주 소				
	④전화번호		⑤FAX		
대 상 자동차	⑥자동차번호		⑦차대번호		
	⑧자동차제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식()년 <input type="checkbox"/> 배기량()CC			
		정원(승합)	명		
		중량(화물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재중량()톤	<input type="checkbox"/> 총중량()톤	
	⑨차명 및 형식	/	⑩용 도		
	⑪등록일자(차령)	년 월 일 (년 월)			
⑫주행거리		⑬사용 연료			
운행 상태	⑭검사 일자		⑮검사 기관		
	⑯검사 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()% (정밀검사 기준 수치()%)			
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년 월 일 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					
시장(지사)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					
구 비 서 류	신청인 제출서류	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(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	수 수 료		
	1.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	1. 자동차등록증(사본) 1부 2.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 서류 1부	없 음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'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²(제활용품)]

[참고2] 「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4호서식

확인번호	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			
소유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FAX	
대 상 자동차	자동차번호		차대번호	
	자동차제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식()년 <input type="checkbox"/> 배기량()CC		
		정원(승합)	명	
		중량(화물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재중량()톤	<input type="checkbox"/> 총중량()톤
	차명 및 형식	/	용 도	
	등록일자(차령)	년 월 일 (년 월)		
주행거리		사용 연료		
확 인 결 과	지급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	
	지급불가 사유			
	지원가액	원 (₩)		
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시장(지사) 또는 절차대행자 (인)				
※ 참고사항				
1.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'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'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.				
2. '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'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				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²(제활용품)]

[참고3] 「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5호서식

확인번호			
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			
소유자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	전화번호		FAX
신 청 자동차	자동차번호		차대번호
	자동차제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식()년 <input type="checkbox"/> 배기량()CC	
		정원(승합) : 명	
		중량(화물) :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재중량()톤 <input type="checkbox"/> 총중량()톤	
	등록일자(차령)	년 월 일 (년 월)	
	주행거리		사용연료
보조금신청금액	원 (₩)		
폐차 관련	말소 일자	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	
	신차 구매계획	예상구매 월	
		구매 차량	
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,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년 월 일 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			
시장(지사) 귀하			
※ 첨부서류 1. 자동차 말소 등록증(원본 또는 사본) 2.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.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[참고4] 「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6호서식

확인번호			
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			
소유자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	전화번호		FAX
신 청 자동차	차량번호		차대번호
	차 종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식()년 <input type="checkbox"/> 배기량()CC	
		정원(승합) : 명	
중량(화물) :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재중량()톤 <input type="checkbox"/> 총중량()톤			
점 검 결 과	원동기	<input type="checkbox"/> 가동됨 <input type="checkbox"/> 가동안됨	
	동력전달장치 (변속기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양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량	
	조 향	<input type="checkbox"/> 양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량	
	제 동	<input type="checkbox"/> 양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량	
	전 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양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량	
	그외 주요 부품	<input type="checkbox"/> 양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량(해당 부품명:)	
	첨부물	사진 4매(전·후·좌·우면)	
판 정 결 과	정상 가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
	불가 사유		
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(정상가동) 여부를 확인합니다.			
년 월 일 확인자 : (인)			
절차대행자 (인)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